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환경부고시제2020-142호

「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」 제정

「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」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30일

환 경 부 장 관

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입금지 품목)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, 폐폴리프로필렌(PP), 폐폴리에틸렌(PE) 및 폐폴리스티렌(PS)

제3조(조건부 수입허용) ①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.

1.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
2.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신청했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20-470호

성남북정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(2차) 및 지구계획 승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159호(2019. 4. 8.)로 지정 변경(1차)된 성남북정1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(2차)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(전화 : 031-786-6365)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(전화 : 031-729-450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020년 6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I. 공공주택지구 지정(변경)

1. 주택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 (변경)

- 가. 명 칭 : 성남북정1 공공주택지구
- 나. 위 치 : 경기도 성남시 북정동, 창곡동 일원
- 다. 면 적 : 기정 569,539㎡

변경 577,708㎡(증 8,169㎡)

2. 주택지구의 지정(변경)일 : 관보게재일

3. 사업의 종류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에 따른 공공주택사업

4.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

- 가. 명 칭 : 한국토지주택공사
- 나. 소재지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- 다. 대표자 성명 : 변 창 흡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 (변경) : [붙임 3]

6.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

-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(전화 : 031-786-6365) 및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(전화 : 031-729-450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II. 지구계획 승인

1. 지구계획의 개요

가. 주택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- 1) 명 칭 : 성남북정1 공공주택지구
- 2) 위 치 : 경기도 성남시 북정동, 창곡동 일원
- 3) 면 적 : 기정 569,539㎡

변경 577,708㎡(증 8,169㎡)